

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(제15조의4제1항 관련)

구분	지정 기준
1. 인력	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를 1명 이상 갖추 것. 이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고 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강사 산정 에 포함한다. 가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 하는 학교에서 교육과목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. 교육과목 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의 연구실 적이 있는 사람 다. 교육과목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 에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.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 력이 있는 사람 마. 교육과목 관련 분야에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 람. 다만, 체포·호신술 과목의 경우에는 무도 사범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을 말한다.
2. 시설·장비	가. 지정기간 동안 교육 수행에 필요한 강의실과 사무실을 소 유 또는 임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할 것 나. 교육 수행에 필요한 컴퓨터, 시청각 장비 등 교육훈련 기 자재를 확보할 것 다. 체포·호신술 과목의 경우에는 실습을 위한 별도의 공간 또는 매트 등 안전장비를 확보할 것 라. 기계경비지도사 교육에 필요한 감지장치, 수신장치 및 관제시설을 갖춘 실습실을 확보할 것

비고

위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비지도사 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·장비의 세부기준 등은 경찰청장이 정한다.